

감사보고

업무감사

일시 : 2019. 2. 15.(금) 10:00 -12:00

감사 : 한인영

장소 : 법인 교육장

● 총평

- 1) 2018. 8.14. 각 기관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서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사업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목표 대비 50% 미만인 경우 4/4분기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음.
- 2) 각 기관들이 외적 규모나 내적 규모가 상이하나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연 39억 이상을 집행하며 종사자 48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연 13억을 집행하며 종사자 20명이 사업을 수행하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 32억을 집행하며 종사자 33명이 사업을 진행함. 각 기관이 지자체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며, 직원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인의 심각한 민원이 없었으며 외부평가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 결과는 2019년 3월 이후 발표예정이나 우수 기관 선정으로 예측됨.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우수 프로그램

- (1) “ 광명에 뜬 무지개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 (2) “ 광명학당 ” 비 문혜 어르신 한극교육 및 사회적 관계 강화
- (3) “ 하쿠나마타타 ” 저소득 아동 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4) “ 알콩 달콩 가족모임 ” 독거노인 관계형성
- (5) “ Man to Man 등대지기 ” 저소득층 청소년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 (6) “ 쭉 쭉 쭉 ” 장기요양 어르신 인지향상
- (7) “ 친구야 함께 놀자 ” 장애, 비 장애 아동 통합 프로그램

총 사업을 140개 세목으로 운영하면서 목표달성 90% 이하는 57개(40%)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려 됨. 1일 평균 1,678명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지역개발로 지역을 떠나는 이용자가 늘어남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함.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우수 프로그램

(1) “ 아자 아자 ” 독거 남성 자조모임 - 영도구청 지역사회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

(2) “ 우리 동네 행복상리 ” 주공단지로 새로 이사 온 어르신과 이웃의 관계형성

(3) “ 워킹 상리 ” 주민 건강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만보기 보급 및 시상

(4) “ 힐링 봉사단 ” 저소득가정의 방치된 자녀의 주말 여가 활동과 재능기부

총 사업을 86개로 정하고 목표달성 90% 미만 사업은 12개로 총 사업 달성은 105.6%로 목표 대비 실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임대아파트단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우수 프로그램

(1) “ 이음 ” (아산재단 1억 원 지원 사업) 기혼 지적여성 장애인가족을 위한 권익옹호지원 사업으로 실 인원 138명이 사람중심계획에 기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적장애여성 및 자녀들의 작품집 <반짝 반짝 거울책>을 발간함과 해당직원의 해외연수로 역량 강화

(2) “ 내일 세움 아이 세움 ” 여성발달장애인의 보육도우미양성을 통한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전문성과 교육과 현직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멘토 양성.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사업을 251개로 정하고 목표달성 90%미만은 5%(13개)로 총 사업 달성은 119.2%로 목표 대비 실적이 높게 나타남. 또한 목표달성 200% 이상은 10%(26개)임을 감안하여 2019년 사업실적 량을 높이고 실적 미비는 신규 이용자 접수 상담, 복지관 기관방문과 복지관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사업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감사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 사 회 귀중

2019년 2월 25일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법인사무국,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다솜장애인주간보호,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 하누리주간보호,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종병기공동생활가정,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한국재난안전건강진흥원, 행복플러스가게 2곳, 서은단기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 상리노인복지센터, 상리지역아동센터, 상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도구푸드마켓 및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이하 “한국재활재단”이라 함)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수행한 사업의 수입과 지출 및 재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 회계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자산·부채 내역(이하 “재무제표”라 함)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재활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였으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수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가 (복지)한국재활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지내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김 호 순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장 대 익

수정 및 권고사항

2019. 2. 20.

1. 고정자산대장관리 철저(상리복지관)(공통)

비품대장 목록과 자산관리카드, 또는 결산서의 당기 비품증감액과 자산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다음 내용에 유념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취득 및 멸실폐기처분에 따른 고정자산의 등재 및 삭제 이전에 품의서 결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고정자산(비품 등)의 취득 및 멸실 시에는 기말에 고정자산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및 멸실 품의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즉시 등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품대장의 목록은 취득일자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대장은 품목순으로 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가 변경되었다고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고 목록이나 품목별 대장은 계속하여 추가기입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 사용한 대장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대장과 신 대장의 내용을 빠짐 없이 이기하였는지를 담당자와 차상급자가 건별로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 대장은 일정기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음)

- 폐기 또는 멸실된 비품은 품의서 작성하여 결재 후 붉은색 이중선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품대장에 신규 등재하는 경우와 폐기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자와 품의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행복플러스가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10%)에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회계상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 이외의 법정 기타 수입금액(ex. 고정자산의 매각수입 등)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차입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되 차입금의 차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위의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현금매출)

3. 선급금의 지급(진흥원)

2018년 10월 8일에 프로그램제작비로 교영이앤씨에 선급금을 15,654,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019년도에 발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급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용카드 사용(진흥원)

회계장부상에서 발견한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표자 개인카드 또는 이동영직원카드라고 기재된 것이 다수 발견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카드나 직원의 개인카드사용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할 때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사용 후에는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된 금액은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카드(이동영직원카드 등)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cf. 송우진 휴가비 100,000직급(2018.8.2)

5. 감사준비 미흡(진흥원)

기중감사와 기말감사 모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감사에 임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기장을 담당한 법인에서도 감사 당일까지 회사에서 기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을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전언을 들은 바,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6. 2019년 사회복지시설 개정사항 중 법적 형태 변경 필요

현재 단독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지역아동센터 및 광명어르신보호센터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재활재단 지점형태로 법적 형태를 변경해야 하며, 개정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신설>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상 명의를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명의로 동일해야 함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지양